

제322회 정례회

2013. 7. 3(수)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문홍열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6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6월 25일

3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, 도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 → 제58조

나. 불필요한 조문정비

- 제2조(정의) → 조례 내용과 불부합하며, 상위법의 내용과도 불일치함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「환경정책기본법」의 조문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
-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가. 「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